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국민건강보험법」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·행정예고 알림

1.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(입법·행정예고)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및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(고시)」 개정안을 [붙임1~2]와 같이 입법·행정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 내용

- (시행규칙) '21.3.1.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-2(유학), D-4(일반연수) 유학생 포함
- (고시) 유학생 보험료 연차별로 차등 부과 및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 규정
 - (보험료 부과) '21년 보험료('21.3.22)는 평균 보험료의 70% 감액하고, '23년까지 매년 10%씩 경감률 완화
* 경감률: ('21.3~'22.2) 70% → ('22.3~'23.2) 60% → ('23.3~) 50%
 - (적용 시점)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(D-2)과 초중고 유학생(D-4-3)은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며, 재외동포(F-4)도 학위과정·초중등교육 유학 시 입국일부터 당연가입
* 어학연수(D-4-1, D-4-7)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

□ 의견 제출방법

- [붙임1~2]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및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(고시)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'21.2.15.(월)까지 우편*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해 의견 제출

* 의견 제출방법(우편)

- 제출처
 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4층,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
 - FAX : (044) 202 - 3933
- 기재사항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 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 등

3. (기타 사항) 본 개정안에 따른 적용은 '21.3.1로 학위과정 유학생이 학기 준비 등을

위해 3.1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후부터 3.1.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유학생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·관리 실태조사 의료보험 가입률 지표 조정은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.

- 붙임 1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.
2.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.
3. (복지부 보도참고자료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·행정예고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,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



주무관 이정호 행정사무관 전보애 교육국제화담 전결2021.1.15. 당관 김진형

협조자

시행 교육국제화담당관-361 (2021. 1. 15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, 교육부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797 팩스번호 044-203-6788 / wglee84@korea.kr / 비공개(5)